

I. PL과 연대책임

글·박홍모 대표 해동전자

연대(連帶)

연대(連帶)는 폴란드의 자유관리노조(自由管理勞組), “솔리다리노시치”라 칭하는데 영어로는 솔리다리티(solidarity)다. 그래서 Solidarity하면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1980년 여름에 식육(食肉)가격인상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된 폴란드 노동자들의 파업 때 결성되었다.

그해 8월 31일 동구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이른바 자주관리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정부와 노동자간의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000만명 이상을 동원한 <연대>는 요구조건을 기업의 완전자주관리와 선거의 완전자유화로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정부와 노조간의 대립은 첨예화되어 심각해졌으며, 그때 당시 이미 악화일로에 있던 폴란드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심한 혼미상태에 빠졌다.

한때 <연대>에 대해 시민들이 부푼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야르젤스키에 의한 계엄령선포로 인해 자유화의 희망은 무참히도 끊어졌다. 그후 다행히도 1983년 7월 22일 독립기념일에 계엄령이 해제됐으나, 치안유지를 강화한 특별규제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령은 계속 되고 있었다.

연대(連帶)란 서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서로 책임을 짐을 말한다. 그래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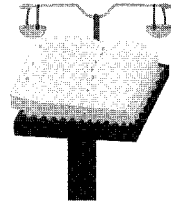
나의 채무에 대해 복수의 채무자가 각자 전액의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가 이른바 연대책무(連帶債務)이다.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외에, 연대책무자 한 사람에게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있어서, 채무의 근본이 되는 취지는 계약내용·거래관습·신의와 성실의 원칙에서 판단된다. 그 종류로는 이행불능·이행지체·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책임이 추궁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가 있을 때를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고, 또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변제(辨濟)

이와 관련하여 변제(辨濟)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급부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달리 이행이라고도 한다. 이행(履行)은 의무(義務)의 실행이나 채무소멸의 경우의 변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행불능이란 채권성립 때에 가능했던 급부(給付)가 그 후에 불능이 되는 일인데 일명 급부불능이라고도 한다.

<이행(履行)의 소(訴)>는 금전을 지불하라, 물건을 인도하라, 또는 가옥을 명도하라, 소음을 내지말라



등을 내세워 그 이행 판결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변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따를 것을 요한다. 그리고 이행의 장소는 특약이 없는 한, 특정물의 인도의 경우는 그 물건의 소재지, 기타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소가 된다. 또 변제자는 채무자 외에 제3자라도 좋고, 채권자 등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공탁에 의해 채무를 면할 수도 없다. 이때 채권자에게 영수증과 채권증서의 교부의무가 생긴다.

보증금(保證金)은 보증으로 거는 돈(security money)인데, 채무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채무 또는 계약 기타 일정한 행위의 이행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 등 일정한 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예로서, 가옥의 임대차계약시에 요구되는 보증금, 신원보증금 또는 영업보증금 따위와 같은 것이다.

또 회계법상으로는 정부와의 계약체결시의 계약보증금과 입찰시의 입찰보증금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보석에 있어서의 보증금, 민사상으로는 소명(疏明 : prima facie evidence)의 대용으로서의 보증금이 있다.

보증(security)

보증(security)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이다. 그리고 보증보험(保證保險)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자가 전보(填補)할 것을 보험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원보증보험·이행 보증보험·인허가(認許)보증보험 등이다.

이때 보증인(保證人)이란 보증하는 사람,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guarantor)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어떤 사항을 담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사법상으로는 보증채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 자격

은 능력자일 것, 변제의 자금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하며, 민법상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연대보증(連帶保證)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이다.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같은 것이다. 그리고 상행위에 의한 채무의 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이 된다.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과 같다. 그러나 최고(催告)나 검색(檢索)의 항변권인 보충성이 없어, 주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는 다르다.

연대보증인이 변제했을 때에는 단순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이 생긴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도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변제의무를 진다.

또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증한도는 특약이 없으면 주채무의 전부에 미치지만,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보증한도액을 특약할 수도 있다.

7월 1일부터 PL법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연대배상책임이 도입되어 있다. PL법에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그리고 유통업체 등 다양하다. 또 제조업자 중에서도 부품제조업자, 원재료제조업자 등도 제조물책임(PL)법상 책임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완성품에서 완성품 제조업자는 물론이고 부품이나 원재료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자, 부품업자, 판매자 및 유통업자는 결함이 그들에게도 있다면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